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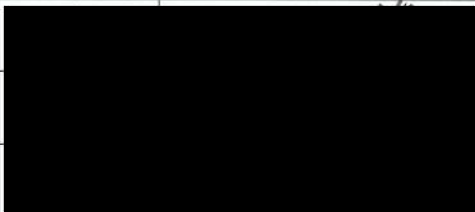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번 호 : SP-AM-014
개정일 : 2024.11.12.
페이지 : 1 / 3

기안부서	지원)전략기획팀	제정, 개정, 폐지권자	대표이사
개정주기	필요시	제정 일자	2022.12.01.

개정 이력

구분	제·개정		연월일	개정내용	개정 사유
	전면	부분			
0	○		2022.12.01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제정	최초 제정
1		○	2024.11.12	CI 및 사명 변경	부분 개정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련 규정						대 표 이 사	
관련 부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스페이스프로(이하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사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야 할 경우의 그 절차를 아래에 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3조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등, 주요주주,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
2.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3. "주요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4. "관계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을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매출 / 매입거래
2. 부동산 구입 / 처분
3. 용역거래
4. 대리 및 임대차 협약
5. 연구개발의 이전
6. 면허 약정
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8. 담보 / 보증
9.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제5조 (거래의 승인 및 방법)

- ①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승인은 각 거래 건별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동종 · 동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 기간 · 한도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한번에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의 필수 내용)

이해관계자 거래의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이사들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득해야 한다.

제7조 (거래가격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가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 이사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